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952호 2013. 9. 3(화)

◀ 공 고 ▶

-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시의회 공고 제2013-20호) 2
-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시의회 공고 제2013 - 21호) 3

◀ 기 타 ▶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8

회 람									
--------	--	--	--	--	--	--	--	--	--

공 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20호

제 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포항시의회 의원 이준영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2013년 9월 2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8월 23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1호

공 고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안 제5조)
- 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안 제7조~안 제8조)
- 라.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주민감시원 운영(안 제9조)
- 마.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급여(안 제10조)
- 바.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9.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석면주민감시원) 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주민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석면 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 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장
-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③ 감시활동에 참여한 주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영 제52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 공 표 일 : 2013년 8월 27일
- 검 사 일 : 2013년 8월 중
- 검사기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검사대상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10개소
 - 정 수 : 유강정수장 등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8개소
 - 한국수자원공사
 - 정 수 : 학야정수장 1개소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7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2개 항목
 -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10개 항목

- 검사결과
 - 정 수, 노후지역 수도꼭지 :
 - 전항목에 대해 모두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임

구 분 (상수원)	유 강	공 단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 고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임하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 원수 등급 선정 기준 (환경부)

매우좋음	중 음	약간좋음	보 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Ia	Ib	II	III	IV	V	VI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3년 8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8. 27.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8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안계면수		임해면수		형산강 안계면수		진전지	눌태지수	공강천 북류수	(수자원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흥해읍	신광기계앞부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변성대장균(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30	0.22	0.20	0.29	0.30	0.17	0.21	0.34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0.6	1.3	1.8	0.6	0.5	0.7	0.5	1.6	1.4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2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6	0.02	0.02	0.06	0.07	0.01	0.03	0.05	0.02	
	건강상 유해영양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득제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80	0.65	0.55	0.30	0.51	0.23	0.70	0.22	0.86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70	0.030	0.064	0.048	0.027	0.040	0.048	0.011	0.041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7	0.026	0.058	0.024	0.023	0.028	0.025	0.002	0.037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23	0.004	0.006	0.016	0.004	0.010	0.016	0.004	0.004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10	불검출	불검출	0.008	불검출	0.002	0.007	0.005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뢰, 기계 일부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테지수	공강천 복류수	홍해음	
			동지역 전체				연일음	오천음	구룡포음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4	48	64	104	115	42	52	105	69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3.3	3.5	4.2	3.8	4.0	3.0	3.6	4.4	5.0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4	7.0	7.0	7.4	7.2	6.8	6.8	6.8	7.1	
45.아연(Zn)	3mg/ℓ이하	불검출	0.004	0.002	0.002	0.007	0.005	0.002	0.491	0.002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4	10	15	34	37	15	26	19	13	
47.총발산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00	65	108	189	213	67	125	188	149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0.0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15	0.08	0.15	0.09	0.08	0.10	0.30	0.10	0.04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44	13	16	44	55	16	26	69	17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5	0.02	0.03	0.03	0.0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2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독량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병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18	0.54	0.51	0.28	0.49	0.13	0.65	0.16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57	불검출	0.002	0.019	0.011	0.007	0.004	0.557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4	10	15	34	37	15	26	18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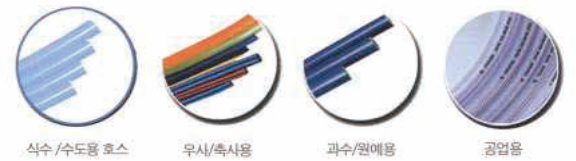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수돗물에서 소독 및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이유

식당 등에서 끓인 보리차나 음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스사용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VC 호스의 경우, 페놀 및 2,4-디클로로페놀(91년 발생한 페놀사태의 원인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으며, 특히 클로로페놀류는 강한 소독 냄새와 유사한 냄새를 유발시키며 가열을 해도 일반 소독용 염소와 달리 휘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에서 강한 소독냄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무취 식수 수도용 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